

입학사정관 임용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여자대학교(이하 ‘본교’ 라 함) 입학사정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입학사정관은 학생부종합전형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임용되거나 위촉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입학사정관의 종류) ① 입학사정관은 전임사정관과 위촉사정관으로 구분한다.

② 전임사정관은 채용사정관, 전환사정관, 교수사정관으로 구분하며 채용사정관은 선임사정관, 일반사정관으로 구분한다.

1. 채용사정관은 전임사정관으로 신규 채용된 입학사정관을 의미한다.

2. 전환사정관은 본교 직원 중에서 입학사정관 직무수행을 위해 전임사정관으로 발령된 경우를 의미한다.

3. 교수사정관은 본교 교원 중에서 입학사정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상시적으로 학생선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대학이 입학사정관 보직을 부여하여 책임시간 감축과 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교수를 의미한다.

③ 위촉사정관은 내부위촉사정관과 외부위촉사정관으로 구분한다.

1. 내부위촉사정관은 학생부종합전형업무를 위해 교내 교수 중 위촉된 자를 의미한다.

2. 외부위촉사정관은 학생부종합전형업무를 위해 외부에서 위촉된 자를 의미한다.

제4조 (임용) ① 채용사정관은 입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② 채용사정관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입학전형업무에 탁월한 경력과 실적을 갖춘 자의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③ 채용사정관의 임용은 ‘교직원임용규정’, ‘사무직원임용 시행세칙’, ‘입학사정관 임용 규정’ 등의 규정과 지침에 따른다.

제5조 (임용기간) ① <삭제>

② 채용사정관 중 정규직과 장기계약직의 임용기간은 ‘사무직원임용 시행세칙’을 따르며, 계약직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박사학위 소지자는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재계약할 수 있다.

제6조 (임용계약) ① 전임사정관의 임용계약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하되 임용기간, 직급, 보수, 재계약 조건, 기타 임용조건 등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② 계약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임용절차

제7조 (채용공고) 전임사정관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본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구비서류) 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졸업 및 성적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각종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6. 각종 공인외국어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삭제>

② 입학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입학사정관 인사위원회) ① 전임사정관의 임용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라 함)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한 교수, 입학처장, 입학팀장, 교수사정관, 전임사정관 등 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된다.

제10조 (채용방법) ① 채용사정관의 채용은 1차 서류전형, 2차 실무능력평가, 3차 면접의 순으로 시행한다.

1. 서류전형 : 지원서, 자기소개서, 학력, 경력, 외국어 능력 및 각종 자격증 등을 토대로 2차 실무능력평가 대상자를 선발한다.
2. 실무능력평가 :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한 논술, 자료분석, 통계분석, 외국어 등의 실무능력을 평가한다.
3. 면접 : 인사위원회는 대입전형제도, 본교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 고교교육과정의 이해 그리고 인성, 사회적 경험, 의사소통 및 홍보능력 등에 관하여 지원자에 대한 최종 면접을 실시한다.

② 차수별 평가항목 등에 관하여는 인사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삭제>

제 3 장 임용자격, 직급, 보수

제11조 (임용자격) 입학사정관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전임사정관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본교 채용사정관 경력 3년 이상 되는 자
2. 일반사정관 : 학사학위이상을 소지하고 계약에 의해 임용된 자
3. <삭제>
4. 교수사정관 : 본교 교원 중에서 상시적으로 학생선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위촉된 자로, 입학사정관 보직을 부여받고 책임시간 감축과 보직수당 등을 지급받는 교수
5. 전환사정관 : 본교 직원 중에서 입학사정관 직무수행을 위해 전임사정관으로 발령된 자
6. 위촉사정관 : 학생부종합전형업무를 위해 위촉된 자

제12조 (직급) <삭제>

제12조 (보수) ① 채용사정관의 보수는 해당사업비 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별도로 규정한 보수표에 의해 지급한다.

- ② 위촉사정관에게 보직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의무 및 금지

제13조 (의무) ① 입학사정관은 학내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본교의 교육목적 달성과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입학사정관은 학생부종합전형에 있어서 공정성과 청렴유지 등 최고의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③ 입학사정관은 입학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얻은 입학관련 제반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④ 입학사정관은 대학의 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⑤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간 매년 본인 퇴직 월에 재직현황을 입학처에 고지해야 한다.

제14조 (금지) 전임사정관은 소속장의 허가 없이 영리 또는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제 5 장 재계약 조건, 복무

제15조 (재계약 조건) ① 채용사정관의 재계약은 재계약 심사평정을 통과한 자에 한한다.

② 채용사정관의 재계약 심사평정은 업무능력 평정결과를 토대로 하고, 해당 평정표 등은 인사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복무) 입학사정관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준용) 이 규정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과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9 제19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5조 2항, 제9조 2항, 제10조, 제13조 3항, 제14조 개정<2010 제7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

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호, 제11조제1호 내지 제4호, 제12조제1항 내지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2항, 제16조 개정,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 신설, 제5조제1항 삭제 <2011 제9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제3항, 동조동항제1호 내지 제2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1호 및 제3호, 제4호, 제13조제2항 개정, 제13조제4항 신설 <2011 제20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 개정 <2012 제10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호, 제4호, 제15조제1항, 제2항 개정,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11조제5호, 6호 신설, 제8조제1항제7호 삭제 <2014 제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제1항, 제8조, 제9조제2항 개정 <2015 제15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13조제5항 신설 <2016 제17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9조제2항 개정 <2018 제7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호 개정, 제11조제3호 삭제, 제13조제5항 개정 <2020 제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제6호, 제13조 제2항 개정 <2020 제15차 교무위원회>)